

종달일	불변기일
5/30	6/13

1997. 2. 13. 판결선고	인
1997. 2. 13. 원본영수	

서울지방법원

판 결

사 건 94가단175355 손해배상(기)

원 고 1. 김 선 웅

2. 박 정 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 순, 이 찬 진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최 상 엽

소송수행자 정홍화, 유종재, 신동권, 임기근, 황병진, 조충행,

박미자

변 론 종 결 1997. 1.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는 피고 산하 보건복지부장관들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과도하게 저리의 공공부문에 전용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기금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고 국민연금가입자들인 원고들에게 장래의 연금수급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이 제소 당시 국가배상법상의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고 그 국가배상청구 소송 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배상심의회 결정이 있거나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전심 절차에 관한 하자는 치유되는 것인바 강제10호종의 1,2, 강제11호종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제소 후인 1996. 9. 5.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각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같은 해 11. 28.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4, 5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기록에 편철된 헌법재판소 96헌가6호 사건의 결정의 각 기재, 증인 정경배의 일부 증언과 당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사업은 1973. 12. 24. 법률 제2655호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시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하여 계속 그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1986. 12. 31. 법률 제3902호로 법률의 명칭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전문개정하여 1988. 1. 1.부터 시행된 것인데,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국민연금법 제1조) 마련된 것이다.

(2)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크게 공공부문, 금융부문 및 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운용되고 있는바, 공공부문에의 운용은 1994. 2/4분기까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는 방식으로{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공자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참조}, 1994. 3/4분기 이후에는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부문에의 운용은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주식의 매입이나 금전신탁 등의 방법으로 이

투어지고 있고, 복지부문은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금 용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휴양시설 설치 사업비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3) 1995. 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 17조 9860억원 중 11조 4770억원(63.8%)을 공공 부문에, 4조 8750억원(27.1%)를 금융 부문에, 그 나머지 중 8220억원(4.6%)을 복지 부문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총기금에 대한 공공부문의 비율은 공자법 시행 이전인 1988년도에 54.6%, 1989년도에 50.9%, 1990년도에 46.3%, 1991년도에 45.6%, 1992년도에 44.8%, 1993년도에 40.5%, 1994년도에 57.7%였음), 공자법 시행 이후인 1994년도와 1995년도에는 사회 간접자본등 공공투자의 수요가 급증하여 신규투자액의 87%-88%를 공공 부문에 투자하였으나 1996년도에는 신규투자액의 63.6%만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4) 관리기금에 예탁되는 연금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데(공자법 제7조 제2항), 1994. 6. 7.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예탁기간 5년인 기금예탁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최근 3개월간 시장금리로 발행된 중장기 국채(만기 3년 이상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채관리기금채권)의 발행금리와 각종 기금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각종 기금의 금융자산보유현황과 최근 3개월간 자산별 시장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하고(매 분기별로 산정한 금리와 기존의 적용금리의 차이가 연 0.5%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며 그 차이가 연 0.5% 이상이 될 때에만 기준금리를 변경한다), 예탁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기준금리보다 다소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금리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채 발행시 이를 금융시장에서 경매에 부쳐 금리가 정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므로 기준금리에는 금융시장의 실세금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다만 국채는 투자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다소 낮은 금리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한편, 1995년 말까지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결과, 공공부문의 수익률은 평균 연 11.64%(1994. 2/4분기까지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같은 해 3/4분기부터는 관리기금에 각 예탁), 금융부문의 수익률은 평균 연 13.11%, 복지부문의 수익률은 평균 연 10.68%으로서(공공부문의 수익률: 1988. 부터 1992. 까지 각 11.0%, 1993. 은 9.67%, 1994. 은 10.25%, 1995. 은 11.64%. 금융부문의 수익률: 1988. 은 12.95%, 1989. 은 14.35%, 1990. 은 13.83%, 1991. 은 14.04%, 1992. 은 14.07%, 1993. 은 13.87%, 1994. 은 13.91%, 1995. 은 13.11%임) 공공부문의 수익률이 금융부문의 수익률보다 평균 연 1.47%가 낮다.

(5) 연금재정의 기본형태에는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적립하여 적립금의 이식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계획하는 “적립방식”과 일정한 짧은 기간 중에 지출해야 하는 급여를 그 기간내에 납부된 보험료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도록 계획하는 “부과방식”이 있는데, 국민연금법은 원칙적으로 적립방식에 입각한 재

정운용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율(제도 시행 초기에는 표준소득월액의 3%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9%까지 인상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로는 제도가 성숙되고 노령층의 비율이 커지게 되면 적립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4. 12.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보험료율·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급여수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계산하면 2025년경에는 총지출액이 총수입액(보험료+적립금의 운용수익)을 초과하게 되고 그 이후 급속히 적립기금이 잠식되어 2033. 경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되고 그 이후 매년 75조원(2033년) 내지 180조원(2050년) 가량의 연금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원고들의 위헌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분에의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는 ①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함에 있어 국민연금기금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보험가입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헌법규정에 반하는 과잉입법이고, ② 국민연금기금을 일반 금융부문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재정자금에 강제예탁하도록 한 것이 헌법규정에 반하는 과잉입법이며, ③ 공공부문에서의 연금 예수행위가 국고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나 기재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54조 및 제58조에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만으로 볼 때에는 관리기금에 되도록 많은 연금기금이 예탁되기를 원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위 위원회의 운용을 주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커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피고 산하 보건복지부장관들은 위 위헌인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당하게 공공부문으로 자금을 전용함으로써 기금의 파탄을 초래하여 국민연금기금 가입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신탁관계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5. 11. 30. 당원에 위 각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당원은 1996. 2. 15. 위 각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1996. 10. 4. 96헌가6호로 위 각 법률 규정인 공자법(1993. 12. 31. 법률 제4677호)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국민연금법(1993. 3. 6. 법률 제4541호) 제84조 제3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재판관 9인 중 8인의 다수의견)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위 공자법 각 규정에 관하여는 ①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은 헌법 제

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국가가 국민연금의 운영성과와 관계 없이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연금지급을 해야 하는 종국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따라서 국가가 헌법과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응하도록 정부가 그 합리적 재량에 따라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위 공자법 규정은 공공성이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적절한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빌려와 공공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성이 있는 각종 기금이 수익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투기자금화하여 오히려 금융시장,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을 제거하고 각종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며 국가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공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점, 위 각 공자법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의 전액이 아닌 여유자금만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유자금의 예탁의 원칙에 대하여서도 공공자금운용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은 기금관리기본법(1991. 12. 31. 법률 제4461호, 최종개정 1995. 12. 30. 법률 제5136호)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그 시행결과 등의 전과정에 걸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광범위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

로 예탁함에 관하여 국민연금기금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친 바 없고 또 보험가입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② ㉞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동에는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장기적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관리지표이므로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그러한 운동방법이 곧 국민연금가입자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점, ㉟ 공자법 제7조 제2항은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 즉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동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예탁금에 대한 기준금리를 시장금리로 발행된 중장기 국채의 발행금리와 금융자산운동수익률을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자산운동수익률이 국채의 시장금리보다 낮을 수도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와 일반 금융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사이에 언제나 반드시 현격한 수익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닌 점, ㊱ 일반적으로는 공공부문에의 투자가 일반 금융부문에의 투자에 비하여 그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㊲ 국민연금기금은 대다수의 국민이 연금가입자이고 그 규모가 커서 국가경제에 미

치는 영향이 지대한 공공성을 띤 자금이므로 수익성 위주로만 운영할 수는 없고 장기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국가에 예탁하고 적정한 수익을 받는 것 이상의 안정성 있는 투자는 없는 점, ㉔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에는 정부가 재정지원등으로 그 종국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능력은 현재의 여유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느냐에 의존할 터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 점, ㉕ 국민연금기금을 수익성 위주로만 운용할 경우 그 기금의 규모에 비추어 연금기금의 움직임에 따라 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것인 점, ㉖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40년 후에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근본적 원인은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당시에 국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매우 낮게 책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납입액보다 연금 급여액이 훨씬 많도록 되어 있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 금융부문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은 관리기금에 예탁하기 때문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국민연금가입자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순히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할 뿐 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특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3항) 재정경제원장관이 위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사용자 대표, 사용자 외의 가입자 대표, 수급권자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원고들 주장의 위 각 법률 규정에 관하여 합헌임을 선언한 이상(원고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54조, 제58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자법 각 규정에 관한 합헌 이유 ①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판단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판단이 유탈되었다 하더라도 당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심판권이 없다 할 것임.) 당원에서는 위 각 법률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법률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기타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의 제규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국민연금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대한 수익이 나게 운영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 등이 출연한 각출료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상 신탁된 일종의 신탁재산이고 따라서 위 연금가입자인 원고들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각 각출료 상당의 지분비율에 의한 신탁인의 지위에 있고 국가인 피고는 국민연금기금이라는 연금가입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특정 책임준비금을 법률상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바, 피고 및 그 산하 공무원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및 피고 산하의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은 도외시한 채 기금의 배분계획도 미비되고 연금가입자의 의사결정권한도 배제한 상태로 재정경제원의 주도하에 정부의 재정상황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 기금을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90% 이상으로 과도하게 배분, 투자하고 그 이자율(수익률)도 자의적으로 국·공채 이자율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결과 1994. 6. 기준 공공부문 수익률은 연 9.79%으로서 금융부문의 수익률인 연 14.63%보다 연 4.84%나 낮아 1994. 6개월간만에도 금리차로 인한 손실이 금863억원이고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1988. 이래 1994. 6. 현재까지 금리차 손실이 총 3148억원이나 발생하게 함으로써 기금의 파탄을 초래하여 국민연금기금 가입자인 원고들에게 장래의 연금 수급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신탁관계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제83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관리·운용 방법으로 제1호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제2호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신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제2항은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수익성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할 수도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사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하고,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도입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연금의 주요 재원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수급권자 자신이 부담한다는 점과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데 이에 대응하여 국가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수급권자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민연금의 운영성과와 관계 없이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연금지급을 해야 하는 종국적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헌법과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부응하도록 정부가 그 합리적 재량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가입자와 국가가 법률상 또는 계약 유사의 신탁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가입자 개개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개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국민연금제도의 최고의 지표는 기금의 단순한 금전적 수익성이라기보다는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자법이 시행된 1994. 1. 1.부터는 공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기금에 예탁하

는 자금 즉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
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전의 공공부문
예탁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공자법 부칙 제2조) 이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강제예탁을 규정한 공자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합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공자법 제7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며, 공자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일시적으로 국민
연금기금 중 일부를 금융부문의 수익률이나 국·공채 이자율에 비하여 낮은 이자율에 의
하여 공공부문에 배분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에는 정부가 재정지원등으로 그 종국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능력은 현재의 여유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느냐에 의존할 터이고 위 공공부문
에 배분된 기금이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
력을 향상시켰을 것으로 보여지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40년 후에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이 예상되는 근본적 원인은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지 국민연금기금
의 여유자금을 일반 금융부문보다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배분하기 때문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의 배분이 국민경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정상의 편의만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크게 낮은 이자율에 의하여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배분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달리 국민연금법 제 83조 등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연금가입자들의 의사결정권한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 및 그 산하 공무원에게 연금가입자인 원고들과의 신탁관계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국민연금법 등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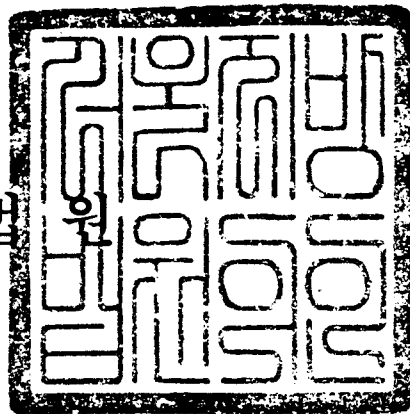
1997. 2. 13.

판 사 여 훈 구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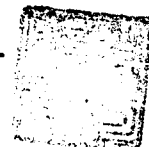
정 본 입 니 다.

1897. 5. 27

서 울 지 방 법



법원주사 유 수 광



8
7
7
7
7